

4.1.25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2. 01. 23.

전부개정 2016. 0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학내·외에서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비밀유지) ① 위원, 직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교직원 6명(교수4-남2/여2, 직원2-남1/여1)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2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며, 해당 위원들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

한다.

④ 위원회 업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위원회 임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의 징계회부 및 교육
3.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의 확보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10조(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제11조(제척)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때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때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피신고인이 소속된 학과(학부)나 부서의 동료교수, 동료직원, 학생인 때

제12조(처리절차)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학생복지처로 신고한다. 단, 신고가 없더라도 교내·외에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될 때 학생복지처에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
2. 신고인 중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4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3. 증인은 제4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신고 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징계한다.
5.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남녀차별 및 성폭력 사항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7.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조치) 위원장은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행위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위원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기각) ① 위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요청)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20조(징계집행) 학생복지처는 가해자·동조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 한다.

1.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일정기간 사회봉사 명령
3. 실명 공개 사과 권고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
5.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
6. 그 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21조(동조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9조제1호에 의해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2조(통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중간, 최종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제23조(재심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기록 및 자료보존) ① 피신고인과의 면담 시 면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폭력관련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